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원가정법원 개원일 연기〉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07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창원가정법원 개원일 연기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7.
3. 회 부 일 : 2025.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제3항).

III. 검토의견

1. 창원가정법원 개원일 연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창원가정법원의 개원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 다만, <u>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으로 <u>2025년</u>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u>2025년</u>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창원가정법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9년</u> ----- ----- ----- <u>2029년</u> ----- ----- -----

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③ -----2029년----

-----202

9년-----

-----.

나. 검토의견

- 제20대국회에서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산하에 5개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690호)」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해당 개정법률(법률 제17124호)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어 2025년 3월 1일 시행 예정임.

당시 통과된 법률안(대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동근의원안(의안번호 제2000971호)과 창원가정법원 및 산하 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주영의원안(의안번호 제2002889호)의 내용을 통합·조정 한 것이었으며, 2025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음.

<관련 법률안 개요 및 심사 경과>

의안명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2건)	· [200097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2016. 7. 18. 발의)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 [200288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2016. 10. 25. 발의) : 창원가정법원
심사경과	· 2020. 3. 3.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대안가결) · 2020. 3. 4.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대안가결) · 2020. 3. 5. : 국회 본회의 의결(대안가결) · 2020. 3. 24. : 공포 (시행일: 2025년 3월 1일, 부칙 규정에 따름)

○ 개정안은 이 중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예정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4년 연기하려는 것으로, 창원가정법원의 청사 신축 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2025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개정법률(법률 제17124호)의 시행 시기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지되었고, 현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2024. 12. 24.)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신축 기본 계획 변경 중으로 재설계 완료 후 2026년 10월 착공이 이루어지면, 2028년 7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창원가정법원 추진일정(안)>

구분	기존 일정	변경 일정(안)	비고
설계	2021.07.14.~2022.10.06.	2021.07.14.~2026.04.	현재 설계용역 중지 중이나 총사업비 확정(2024.12.)으로 재개 준비 중
공사발주 및 착공준비	2022.10.~2022.12.	2026.05.~2026.09.	
공사	2023.01.~2024.12.	2026.10.~2028.07.	공사기간 22개월
개원준비	2025.01.~2025.02.20	2028.08.~2028.11.	이사, 네트워크 공사 등
개원가능일	2025년 3월 1일	2028년 12월 1일*	

*개원가능일은 2028년 12월 1일이나, 법원행정처는 공사 지연 가능성, 법관 정기인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실제 개원일은 2029년 3월 1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참고로, 당초 201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경우에도 신설부지 확정 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청사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¹⁾을 통해 개원일을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연기한 사례가 있었음.
- 한편, 개정안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1일 전에 법률안 심사, 의결 및 공포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현재 우리 위원회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일을 연기하는 법안 (의안번호 제7258호, 모경중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제152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7. 12. 19. 공포 및 시행)
- 관련 법률안 : [2009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5인, 2017. 9. 13. 발의)
- 2017. 11. 29.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017. 11. 30.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수정가결)
- 2017. 12. 1. : 국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17. 12. 19. : 공포 및 시행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창원가정법원 청사 신축 추진 일정 지연으로 현재 법률상 시행일인 2025. 3. 1.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창원가정법원 청사 신축 공기 및 법관 정기인사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개원이 가능한 2029. 3. 1.로 시행일 및 사건관할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